IP NEWSLETTER
2018년5월발행통권제121기

2017년 중국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례

1. 광동가다보음료식품유한회사(广东加多宝饮料食品有限公司)와 광저우왕라오지대건강산업유한회사(广州王老吉大健康产业有限公司),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广州医药集团有限公司)의 유명상표 특유 포장, 장식 무단 사용에 의한 2건의 분쟁 (최고인민법원(2015) 민3종자 제2, 3호 민사판결서)
2. 시샤룽청특수재료유한회사(西峡龙成特种材料有限公司)와 위린시지식재산권국(榆林市知识产权局), 산시석탄산업화공그룹 썬무텐웬화공유한회사(陕西煤业化工集团神木天元化工有限公司)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처리건 (최고인민법원(2017) 최고법행재84호 행정판결서)
3. 푸저우쌀공장(福州米厂)과 오상시찐푸타이농업유한책임회사(五常市金福泰农业股份有限公司), 푸젠신화두종합백화유한회사 푸저우찐산따징성분점(福建新华都综合百货有限公司福州金山大景城分店), 푸젠신화두종합백화유한회사(福建新华都综合百货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분쟁건 (최고인민법원(2016) 최고법민재84호 민사판결서)
4.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와 북경완썽의약유한책임회사(北京万生药业有限责任公司), 제일삼공주식회사(第一三共株式会社)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분쟁건 (최고인민법원(2016) 최고법행재41호 행정판결서)
5. 상무인서관유한회사(商务印书馆有限公司)와 중국어교육출판사유한책임회사(华语教学出版社有限责任公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건(북경지식재산권법원(2016) 경73민초277호 민사판결서)

6. Weining SHEN(沈韦宁), Danyan SHEN(沈丹燕), Maiheng SHEN(沈迈衡)과 남경고전경매유한회사, Hui ZHANG(张晖) 저작권 소유권, 저작권 침해 분쟁건(장쑤성 남경시(江苏省南京市) 중급인민법원(2017) 소01민종8048호 민사판결서)
7. 재규어랜드로바유한회사와 광저우분력식품유한회사(广州市奋力食品有限公司), Mingzheng WAN(万明政) 상표권 침해 분쟁건(광동성 고급인민법원(2017) 월민종633호 민사판결서)
8. 사천쭝쩡과학기술유한회사(四川中正科技有限公司)와 광시좡족자치구 박백현 농업과학연구소(广西壮族自治区博白县农业科学研究所), Tengjin WANG(王腾金), Zhenzhuo LIU(刘振卓), 사천쭝썽과학기술종업유한회사(四川中升科技种业有限公司) 식물신품종권 분쟁건(광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2017) 계민종95호 민사판결서)
9. 허비시반광소재유한회사(鹤壁市反光材料有限公司)와 Junchao SONG(宋俊超), 허비뤄이밍터과학기술유한회사(鹤壁睿明特科技有限公司), Jianfa LI(李建发) 영업비밀 침해 분쟁건(하남성(河南省) 고급인민법원(2016) 예민종347호 민사판결서)
10. 북경이차무한정보기술유한회사(北京易查无限信息技术有限公司), Dong YU(于东) 저작권 침해죄 사례(상하이 푸동신구(上海市浦东新区) 인민법원(2015) 포형(지)초자 제12호 형사판결서)

2017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례 안내

1. 왕라오지, 가다보 유명상품 특유 포장과 장식에 대한 분쟁건

광동가다보음료식품유한회사와 광저우왕라오지대건강산업유한회사,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의 유명상표 특유 포장, 장식 무단 사용에 의한 2건의 분쟁 (최고인민법원(2015) 민3종자 제2, 3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2012년 7월 6일,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아래 광약그룹이라 함)와 광동가다보음료식품유한회사(이하 가다보회사이라 함)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모두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红罐王老吉凉茶)” 유명상품 특유의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을 소유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생산 및 판매하는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 상품의 포장과 장식은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는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의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의 소유자는 광약그룹이여야 한다고 인정하며, 광저우왕라오지대건강산업유한회사(아래 대건강회사이라 함)는 광약그룹의 수권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한 빨간 캔 량차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가다보회사는 안건 관련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한면이 “왕라오지”, 한면이 “가다보”와 양면이 “가다보”인 빨간 캔 량차는 모두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이로하여 1심법원는 가다보회사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해소하고 광약그룹에게 경제적 손해 1.5억위안과 권익보호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26만여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다보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가다보회사는 두 건의 1심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심사판결에서는 본 건의 유명상품은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이며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의 캔표면에 있는 “노란색 왕라오지 문구, 빨간색의 바탕색 등 색채, 도안 및 이들의 배열조합 등 구성부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은 유명상품 특유의 포장과 장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광약그룹과 가다보회사는 모두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 특유의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을 주장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하여 빨간 캔 왕라오지 량차의 발전과정, 쌍방의 합작배경, 소비자의 인지 및 공평원칙을 고려하여 광약그룹 및 그 전신과 가다보회사 및 그 관련 기업 모두 안건 관련 특유의 포장과 장식의 권익 형성, 발전 및 영업권을 수립하는데 각자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였기 때문에 안건 관련 특유의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을 완전히 한쪽에게 소유한다고 판결할 경우 불공평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대중의 이익을 손해할 수 있다.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인지를 존중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안건 관련 특유의 포장과 장식에 대한 권익을 광약그룹과 가다보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광약그룹과 가다보회사가 서로 상대방이 생산 및 판매하는 빨간 캔 량차 상품은 타인의 유명상품 특유의 포장과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광약그룹 및 가다보회사의 소송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전형적 의의] 최고인민법원은 공개심리를 통하여 왕라오지와 가다보의 포장과 장식에 관련한 2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언론매체와 사회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두 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일보, CCTV, 신화사 등 주요언론들은 모두 제일 빠른 시간내에 보도를 진행하였다. 사회여론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법치를 통하여 윈윈을 얻었고” “사법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극찬하였다. 국내외 언론들은 본 건의 판결이 유사 사례의 심사판결에 대한 지도적역할을 긍정하였으며 본 건은 중대한 모범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판결은 “상이한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업계의 발전을 추진하였고 사회 각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외에 두 건의 판결은 당사자 쌍방의 존중을 얻었으며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2. “위린국”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처리건

시샤룽청특수재료유한회사와 위린시지식재산권국, 산시석탄산업화공그룹 썬무텐웬화공유한회사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처리건 (최고인민법원(2017) 최고법행재84호 행정판결서)

[사건요약] 시샤룽청특수재료유한회사(아래 시샤회사이라 함)는 산시석탄산업화공그룹 썬무텐웬화공유한회사(아래 텐웬회사이라 함)가 제조 및 사용한 장치가 자신의 “内煤外热式煤物质分解设备” 실용신안특허권(아래 관련 특허이라 함)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린시지식재산권국(아래 위린국이라 함)에게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 9월 1일, 위린국은 위지법처자[2015]9호 〈특허권 침해 분쟁건 처리결정서〉(아래 피소행정결정이라 함)에서는 텐웬회사는 관련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피소행정결정 합의체 구성원에는 바오지시(宝鸡市)지식재산권국 직원인 Hongdong GOU을 포함하였지만 안건 관련 분쟁의 행정처리에 참여한다는 정식적인 공식문서는 없었으며 위린국의 구두심리 기록에도 Hongdong GOU의 정식신분 및 합의체에 참여한 이유를 시샤회사와 텐웬회사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이외에 위린국은 관련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두차례의 구두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제2차례의 구두심리에서 당사자에게 합의체 구성원이 피소행정결정서에 서명한 합의체 구성원과 상이하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시샤회사는 피소행정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시스템내부에서 행정집행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기구 내부행위에 해당하여 내부교류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위린국이 현재 직원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산시성지식재산권국에게 문의한 후 바오지지식재산권국의 직원을 파견하여 안건처리에 참여하게 한 것은 부당한 점이 없으며 작성한 피소행정결정은 법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권리침해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도 피소행정결정은 부당한 점이 없기 때문에 시샤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시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심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시샤회사는 여전히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건에 대하여 재심한 후, 피소행정결정의 작성은 법정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첫째, 위린국은 평등한 민사주체의 관련 특허의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 있으며

엄밀하고 규범적이며 공개하고 평등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합의체 구성원이 명확히 변경된 상황하에서 피소행정결정서에 서명한 것은 법정절차을 중대하고 명확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피소행정결정을 내린 위린국 합의체는 위린국의 특허행정집행자격을 구비한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절차의 규범성과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행정집행활동의 규범 및 강화에 불리하다. 위린국이 제출한 소위의 산시성지식재산권국 협조보호처의 답변은 사실 해당 부서가 해당 지식재산권국 상사에게 받치는 내부문의이며 서류번호는 물론 직인도 없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관리사가 산시성지식재산권에게 보낸 “구체적 안건에서 집행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피소행정결정의 작성시간보다 늦었고 내용으로부터 볼 때 본 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모두Hongdong GOU이 피소행정결정의 합의체에 참여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거로 될 수는 없다. 셋째, 비록 위린국은 구두심리에서Hongdong GOU의 구체적인 신분 및 합의체에 참여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안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는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체의 신분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피소행정행위의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의 전제와 요건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린국과 텐웬회사가 제출한 “시샤회사가 합의체 구성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절차는 합법적이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특허 행정집행 과정에서 절차가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 및 처리와 관련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건에서 이미 변경된 합의체 구성원이 피소행정결정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한 분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판결한 분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이는 법정절차를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하하였다. 원칙적으로 피소행정결정을 내린 합의체는 해당 행정기구의 특허행정집행자격을 구비한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타지로부터 집행인원을 배치 받

을지라도 정식적이고 완정한 공식문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건의 판결은 행정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규범하고 촉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작용을 현저히 보여주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심판영역 개혁창조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제출한 “지식재산권 행정행위 사법심사에 대한 강화”를 충분히 관철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식재산권 영역의 법치건설과 과학기술 창조의 법치환경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稻花香(daohuaxiang)” 상표권 침해 분쟁건

푸저우쌀공장과 오상시찐푸타이농업유한책임회사, 푸젠신화두종합백화유한회사 푸저우찐산따징성분점, 푸젠신화두종합백화유한회사 상표권 침해 분쟁건 (최고인민법원(2016) 최고법민재84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푸저우쌀공장은 제1298859호 “稻花香DAOHUAXIANG” 등록상표(아래 관련 상표이라 함)의 전용권자이며 해당 상표는 1993년 3월에 출원을 제출하여 1999년 7월 28일에 등록을 비준받았으며 사정사용상품은 제30류 쌀이다. 2009년 3월 18일, 흑룡강성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위원회에서 발급한 <흑룡강성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 증명서>에는 “품종명칭은 “五优稻4号(wuyoudao4호)”이고, 원 코드번호는 “稻花香2号(daohuaxiang)”이며, 홍보구역은 흑룡강성 오상시 평원 자연관개구역이며 모내기하여 재배한 것이다. 해당 품종은 구역테스트와 생산테스트를 거쳐 우량품종으로 홍보하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품종을 홍보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2월 18일, 푸저우쌀공장은 공증절차를 거쳐 푸젠신화두종합백화유한회사 푸저우찐산따징성분점(아래 따징성분점이라 함)에서 오상시찐푸타이농업유한책임회사(아래 오산회사라 함)가 판매 및 생산하는 “교가대원 따오화샹”를 한봉지 구매하였다. 실제로

쌀포장지 정면의 중간위치에는 큰 글자체로 “稻花香(글자체의 중간은 비어있고 바탕색은 블랙이다) DAOHUAXIANG”이라고 표기되여져 있다. 푸저우쌀공장은 오상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피소권리침해 상품과 따징성분점과 신화두회사가 판매하는 피소권리침해 상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稻花香”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상회사는 허가없이 상품포장지에 관련 상표와 매우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쉽게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오상회사, 따징성분점, 신화두회사의 행위는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2심법원은 오상시의 특정된 지리적 재배환경에서 산생되는 “稻花香”쌀은 관습적인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오상회사는 자신이 생산 및 판매하는 쌀제품의 포장지에 “稻花香” 글자 및 병음을 사용하여 쌀품종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주관적으로부터 볼 때 선의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부터 보았을 때도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때문에 1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뒤집고 푸저우쌀공장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푸저우쌀공장은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건에 대하여 재심한 후, 오상회사는 “稻花香”이 법정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 방법에서 규정한 보통명칭과 상표법 의미에서의 보통명칭에 대한 뜻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심사결정 공고의 명칭만을 의거로 하여 해당 명칭이 상표법 의미에서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심사결정 공고의 원 코드번호는 “稻花香2号”이고 “稻花香”이 아니며 관련 상표권이 선등록된 상황하에서 “稻花香”이 법정 보통명칭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로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심판결을 취소하고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등록상표의 전용권과 품종명칭 사이의 관계, 보통명칭의 판단표준 등 문제와

관련된다. 본 건에 관련된 “稻花香2号”는 우리 나라 쌀의 주요 생산지 흑룡강오상지역의 우량쌀 품종이므로 안건의 심사는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처리결과는 “稻花香2号” 쌀품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시장질서의 규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법에서의 일부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 법정 보통명칭과 관습적인 보통명칭의 판단표준 및 등록상표 전용권과 품종명칭 사이의 구별점과 연계 등으로부터 해당 유형 안건의 판결표준을 명확히 하였고 등록상표권자와 품종명칭 사용자 사이의 이익관계를 비교적 균형시켰으며 상표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공평하고 질서있는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였다.

4. “마쿠쉬청구항” 특허무효 행정분쟁건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와 북경완썽의약유한책임회사, 제일삼공주식회사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분쟁건 (최고인민법원(2016) 최고법행재41호 행정판결서)

[사건요약] 제일삼공주식회사는 발명명칭이 “고혈압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의약조성물의 제조방법”인 발명특허(아래 관련 특허라 함)의 권리자이다. 관련 특허의 청구항은 마쿠쉬방식으로 작성되였다. 북경완썽의약유한책임회사(아래 완썽회사라 함)는 관련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아래 특허재심위원회라 함)에게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였다. 2010년 8월 30일, 제일삼공주식회사는 청구항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 그 중 청구항 1의 ″또는 약용으로 할 수 있는 염 또는 에스테르″중의 ″또는 에스테르″를 삭제하였고 청구항 1에서 R4에 대하여 내린 정의 ″1개~6개의 탄소원자를 구비하는 알킬기″를 삭제, 청구항 1에서 R5에 대하여 내린 정의 중 카

르복실기와 식COOR5a기 외의 기타 기술방안을 삭제하였다. 재심위원회는 구두심리 과정에서 제일삼공주식회사에게 청구항 1중의 "또는 에스테르"를 삭제하는 수정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만 기타 수정은 특허법시행세칙 제68조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기에 해당 수정본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제일삼공주식회사와 완썽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14일, 제일삼공주식회사는 수정한 청구항 교체페이지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청구항1의 "또는 에스테르"를 삭제하였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제16266호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아래 제16266호 결정이라 함)에서 관련 특허 청구항1은 증거1에 비하여 명확하지 않고 진보성을 구비하므로 특허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때문에 제일삼공주식회사는 2011년 1월 14일에 제출한 수정본에 기초하여 관련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하였다. 완썽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특허법시행세칙 제68조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30일에 제일삼공주식회사가 제출한 수정본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특허 청구항1은 증거1에 비하여 명확하지 않고 진보성을 구비하므로 제16266호 결정을 유지하였다. 완썽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심법원은 마쿠쉬청구항은 병렬기술방안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며 2010년 8월 30일에 제일삼공주식회사가 제출한 수정본은 관련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였으며 특허법시행세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특허 청구항이 포함하는 한개의 구체적인 실시예의 효과는 종래기술 증거1 중의 실시예329 기술효과와 유사하다. 때문에 관련 특허권 청구항 1은 예상하지 못 한 기술효과를 획득하지 못하여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1심판결과 제16266호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특허재심위원회에게 새로운 결정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건에 대하여 재심한 후, 2심판결을 취소하고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마쿠쉬방식으로 작

성한 화합물 청구항은 일종의 개괄적인 기술방안이며 여러 화합물을 집합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마쿠쉬청구항에 대하여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정에 의하여 새로운 성능과 작용을 가지는 한개 종류 또는 한개의 화합물이 생성되여서는 안되며, 이와 동시에 구체적 안건의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쿠쉬방식으로 작성한 화합물 청구항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기본방법인 특허심사지침에서 규정한 “삼보법(三步法)”을 따라야 한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술효과는 진보성 판단의 보조요소로써, 통상 “삼보법(三步法)”을 건너뛰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술효과로 특허출원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마쿠쉬청구항의 성질, 무효절차에서의 수정원칙 및 진보성 판단방법 등 문제와 관련된다. 마쿠쉬청구항은 화학의약 발명특허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특수한 청구항 작성 방식이며 특유의 개괄기능에 기초하여 해당 분야에서 더욱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쿠쉬청구항의 성질, 수정원칙 및 진보성 판단표준 등 문제는 다량의 화학의약류 특허기술방안의 출원과 등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업계와 학계는 이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건에서 마쿠쉬청구항의 성질은 화합물 집합 성질의 기술방안이 아닌 개괄적인 기술방안이며, 마쿠쉬청구항에 대한 수정은 해당 수정에 의하여 새로운 성능과 작용을 가지는 한개 종류 또는 한개의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마쿠쉬방식으로 작성한 화합물 청구항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삼보법(三步法)”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본 건에서 상기 중요 법률규칙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규명한 것은 화학의약 분야의 특허출원 작성과 심사에 대하여 지도적 의의를 가진다.

5.〈신화자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건

상무인서관유한회사와 중국어교육출판사유한책임회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건(북경지식재산권법원(2016) 경73민초277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1957년부터 지금까지 상무인서관유한회사(아래 상무인선관이라 함)는 〈신화자전〉 유통버전을 연속으로 제11판까지 출판하였다. 2010년-2015년,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한 〈신화자전〉은 자전류 도서시장에서의 평균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였다. 2016년까지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한 〈신화자전〉의 전세계 발행량은 5.67억권을 초과하였으며 “최고 인기 자전” 기네스 세계기록 및 “최고 베스트셀러(정기수정)” 기네스 세계기록 등 다수의 영예를 획득하였다. 상무인서관은 중국어교육출판사유한책임회사(아래 중국어출판사)에서 “신화자전”을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는 상무인서관의 미등록 저명상표 “신화자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중국어출판사에서 상무인서관의 〈신화자전〉(제11판) 유명상표 특유의 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에게 중국어출판사로 하여금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며 영향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법원은 “신화자전”은 특정된 역사적 기원, 발전과정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주체 및 객관적인 시장구도를 가지고 있다. 제품과 브랜드의 혼합속성을 가진 상품명칭을 유지하였고 이미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인지를 형성하였고 제품의 출처를 지시하는 의의와 작용을 구비하며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비한다고 인정하였다. “신화자전”은 이미 전국범위내에서 관련 대중들이 알고 있고 비교적 큰 영향력과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신화자전”은 미등록 저명상표라고 인정할 수 있다. 중국어출판사가 자전에서 사용하는 “신화자전”은 타인의 미등록 저명상표를 복제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신화자전”(제11판)에서 사용한 장식이 표현한 문자, 도안, 색채 및 그

배열조합은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작용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유성도 구비하고 있다. 중국어출판사가 사전제품에서 사용한 유사 장식디자인은 대중들로 하여금 충분히 제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고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하여 1심법원은 중국어출판사에게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상무인서관에게 경제적 손해 300만위안과 합리적인 지출 27만여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미등록 저명상표 보호에 관련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이익균형 등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다. 본 건은 “신화자전”처럼 제품과 브랜드의 혼합속성을 가진 상품명칭이 상품의 현저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표준을 확립하였다. 관련 대중이 “신화자전”에 대한 인지도, “신화자전”의 사용지속기간, 판매량, 홍보범위 및 보호받은 기록 등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고 상무인서관의 “신화자전”은 미등록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신화자전”에게 미등록 저명상표로 보호하는 동시에 출판업계와의 정상적인 경영관리질서, 지식문화전파 촉진 사이의 관계를 균형시키는 것도 중요시하였다. 판결에서는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표의 독점사용 권리는 상표 자체이며 상표에 부착되여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상무인서관에게 부여한 “신화자전”상표의 독점사용 권리는 자전유형의 사전을 출판하는 것에 대한 전용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업계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는다. 상표보호의 방식을 통하여 상표권리자가 상품질량을 보장하는 법정의무와 지식전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부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출판업계가 더욱 규범화하고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6. “모순 친필 원고” 저작권 분쟁건

Weining SHEN, Danyan SHEN, Maiheng SHEN과 남경고전경매유한회사, Hui ZHANG 저작권 소유권, 저작권 침해 분쟁건(장쑤성 남경시 중급인민법원(2017) 소01민종8048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모순선생님은 1958년에 자신이 창작한 한편의 평론기사 〈최근의 단편소설에 대하여〉를 붓으로 작성하여 잡지사에 투고하였다. 해당 문장은 〈인민문학〉 1958년 제6기에 발표되였으며 그 후 친필 원고는 Hui ZHANG께서 소유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13일, Hui ZHANG는 남경고전경매유한회사(아래 고정경매회사라 함)에 의뢰하여 여러건의 물품을 경매하였으며 그 중 안건 관련 친필 원고도 포함되여져 있다. 2013년 12월 30일, 고전경매회사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고화질 사진을 올렸고 사진과 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사이트 및 웨이보에서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였다. 대중들은 고전경매회사의 사이트를 열람하면서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전체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홈페이지의 확대기능을 사용하여 친필 원고 매페이지의 세부적 부분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 전시과정에서 고전경매회사는 안건 관련 작품의 원본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들에게 안건 관련 경매물이 찍혀져 있는 팸플릿도 제공하였다. 2014년 1월 5일, 안건 관련 친필원고는 고전경매회사 2013년 가을 중국서화 특별경매에서 경매를 진행하였고 소외인이 1050만위안으로 낙찰하였다. 하지만 그 후 낙찰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원인으로 경매가 성사되지 않아 안건 관련 친필 원고는 여전히 Hui ZHANG가 소유하게 되였다. 경매가 종료된 후 고전경매회사는 계속하여 인터넷에 안건 관련 친필 원고를 전시하였으며 2017년 6월에 삭제하였다. 모순선생님의 합법 상속인인 Weining SHEN, Danyan SHEN, Maiheng SHEN은 Hui ZHANG와 고전경매회사의 상기 행위는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의 판결에서는 고전경매회사에게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Weining SHEN, Danyan SHEN, Maiheng SHEN에게 경제 적손해 1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Weining SHEN, Danyan SHEN, Maiheng SHEN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심법원은 안건 관련 친필 원고는 문자작품이기도 하고 미술작품이기도 하며 Hui ZHANG는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합법 소유권자로써 경매방식으로 자신의 합법 재산을 처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Hui ZHANG의 행위는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고전경매회사는 안건 관련 친필 원고의 미술작품 발표권, 복제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침해를 중지하고 사과하며 손해를 배상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로하여 2심법원은 판결에서 고전경매회사는 Weining SHEN, Danyan SHEN, Maiheng SHEN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 손해 1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미술작품 경매활동에서의 저작권법, 물권법, 경매법 3개법률의 교차,조정 부분의 관련 주체의 권리의무관계 문제와 관련된다. 판결은 물권자와 저작권자의 합법이익을 균형시켰고 경매자의 지식재산권보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판결에서는 미술작품의 저작권과 물권이 분리된 상황하에서 원본 소유자가 법에 따라 행사한 처분권, 수익권, 전시권 행위는 모두 법률적으로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미술작품 원본 소유자는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손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경매회사는 물권자의 의뢰에 의한 경매측으로써 물권을 보호하는 주의의무 외에,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의무도 부담하여야 하고 경매활동을 규범적으로 진행하는 직책도 다하여야 하며 면밀하고 신중하게 저작권자의 권익을 손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판결은 부동한 주체와의 권리 경계선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물권자와 저작권자의 합법 권익을 균형하게 보호하는 사법정신을 표현하였고 경매자 직책에 대한 합리적 표준에 따라

경매회사의 주의의무를 확정하였으며 엄격하게 보호하는 사법동향을 충분히 표현하였다.

7. “랜드로바”상표권 침해 분쟁건

재규어랜드로바유한회사와 광저우분력식품유한회사, Mingzheng WAN 상표권 침해 분쟁건(광동성 고급인민법원(2017) 월민종633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랜드로바회사의 관련 회사는 1996년, 2004년와 2005년에 중국국내에서 제808460호“”상표, 제3514202호 “랜드로바”상표, 제4309460호 “LANDROVER”상표를 등록신청하였다. 상기 상표는 모두 제12류 “육지자동차”등 상품에 사정사용되였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후에 랜드로바회사에게 양도하였다. 광저우분력식품유한회사(아래 분력유한회사라 함)은 사이트, 오프라인매장에서 “랜드로바 비타민 음료”를 홍보 및 판매하였고 관련 제품, 포장함 및 홈페이지 홍보에 사용한 피소표지에는 “랜드로바”, “LADNROVER”, ”Landrover 랜드로바” 및 상하로 배열한 “랜드로바 RandRover” 등이 포함되여져 있었다. 분력회사는 2010년에 제30류 “비의약용 영양액”과 제32류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등 상품에서의 “랜드로바 RANDROVER”상표를 등록신청하였지만 등록을 비준받지 못하였다. 랜드로바회사는 분력회사의 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분력회사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랜드로바회사에게 경제적 손해와 합리적인 권리보호에 지출한 비용 12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2심법원은 랜드로바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안건 관련 상표가 이미 중국국내 사회대중들이 알고 있고 저명상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피소권리침해 행위는 랜드로바회사의 안건 관련 저명상표가 구비하는 현저성과 양호한

영업권을 약화하였으며 랜드로바회사의 이익을 손해시켰기 때문에 제지시켜야 한다. 이로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저명상표의 유형을 뛰어넘는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력을 강화하는것과 관련한 전형적 사례이다. 본 건의 판결은 저명상표 보호 사례에서의 “수요에 따라 인정”, “구체적 사례에 따라 인정” 등 기본원칙을 표현한 것 외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 바로 본 건의 피소권리침해표지 외에 분력회사는 다량의 유명회사, 유명인사와 관련되는 상표선등록 행위를 실시하였으며 권리침해 행위는 주관적 악의가 명확하였다. 본 건의 판결에서는 배상액 확정에 관련하여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120만위안 배상액 확정에 대한 사실근거 및 법률근거를 논술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매점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사법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본 건은 저명상표의 보호력을 강화하고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 행위를 규제하며 사회대중에게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도록 인도하는 등 방면에서 양호한 판결동향과 시범효과를 구비하였다.

8. “博Ⅲ优(boⅢyou)” 식물신품종권 분쟁건

사천쭝쩡과학기술유한회사와 광시좡족자치구 박백현 농업과학연구소, Tengjin WANG, Zhenzhuo LIU, 사천쭝썽과학기술종업유한회사 식물신품종권 분쟁건(광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2017) 계민종95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博Ⅲ优273은 식물신품종권을 획득하였고 품종권 공유자는 광시좡족자치구 박백현 농업과

학연구소(아래 박백농과소라 함), Tengjin WANG, Zhenzhuo LIU이다. 博IIIA도 식물신품종권을 획득하였고 博III优9678, 博III优273의 모체이며 博IIIA 식물신품종의 품종권자는 박백농과소이다. 2003년 11월 2일, 박백농과소와 사천쭝썽과학기술종업유한회사(아래 쭝썽회사라 함)는 〈품종 사용권 양도 계약서〉(아래 2013년 계약서이라 함)를 체결하여 박백농과소는 “博II优815”, “博III优273”의 사용권을 쭝썽회사에게 양도하여 독점 사용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2007년 11월 16일, 쭝썽회사와 박백농과소가 체결한 〈계약서〉(아래 2007년 계약서이라 함)에서는 박백농과소가 博III优9678, 博II优815의 품종사용권을 쭝썽회사에게 양도하여 독점 사용개발(博II优815는 광동지역에만 한하다)을 하도록 하였으며 쭝썽회사는 계속하여 博III优273의 사용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다. 박백농과소는 博III优9678, 博II优815(광동지역에만 한하다)의 품종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수권하여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쭝썽회사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 후 2003년에 효력이 중지된다. 2008년 1월 7일, 박백농과소는 博III优9678, 博III优273의 생산경영을 쭝썽회사에게 수권하였고 博IIIA는 오직 博III优9678, 博III优273와의 짝짓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수권기간은 2008년 1월 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이다. 사천쭝쩡과학기술유한회사(아래 쭝쩡회사라 함)는 쭝썽회사의 수권과 “2007년 계약서”의 약속에 따라 博III优9678, 博II优815 및 博III优273 등 품종을 경영하였다. 2011년 11월 2일, 쭝썽회사는 쭝쩡회사, 박백농과소에게 각각 서신을 보내여 2011년 11월 2일 부터 쭝쩡회사에게 博III优9678, 博II优815 및 博III优273(이미 시장에서 퇴출)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수권을 중지하고 관련 품종의 생산 및 경영권은 쭝썽회사에서 독점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렸다. 쭝썽회사는 博III优273의 개발권을 소유하고 박백농과소는 더이상 쭝쩡회사에게 불임계열과 회복계열의 博III优9678, 博II优815 및 博III优273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박백농과소, Tengjin WANG, Zhenzhuo LIU, 쭝썽회사는 쭝쩡회사가 2011년 11월 2일 부터 여전히 타인에게 의뢰하여 博III优9678, 博III优273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쭝쩡회사의 행위는 안건 관련 식물신품종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쭝쩡회사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경제적 손해 18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2심법원은 博IIIA, 博III优273 두 식물신품종은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2013년 11월 1일에 중지되였다고 공고하였고 2014년 12월 4일에 권리를 회복하였으며 2015년 11월 1일에 또다시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중지되였다고 공고하였다. 1심법원이 博IIIA, 博III优273 이 두 식물신품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쭝쩡회사의 관련 항소 이유는 성립된다. 배상액의 확정에 대하여 다음 요소 “1)당사자 모두가 인정한 1묘당 생산량, 판매가격 및 쭝쩡회사가 인정한 생산면적 2)쭝썽회사의 갑작스러운 수권 중지에 의하여 쭝쩡회사가 불가피하게 받은 손해 3)권리침해의 지속기간 4)안건 관련 식물신품종의 실시권 비용 및 유형, 기간, 범위 등 구체적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심판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쭝쩡회사가 박백농과소, Tengjin WANG, Zhenzhuo LIU, 쭝썽회사에게 경제적 손해 4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련한 전형적 사례이다. 사법실천 중에서 식물신품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품종권자의 허가없이 상업목적으로 수권한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품종권자의 허가없이 상업목적으로 수권한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로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건은 상기 두가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판정과 관련되며 법률적용 방면에서 전형성을 구비한다. 이외에 식물신품종권은 보호기간내에 간헐적으로 중지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이 구비하지 않는 특수성이다. 본 건의 판결은 식물신품종 보호에서의 특수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권리침해 행위 및 배상액에

대하여 정확히 인정하였고 유사 사례의 판결에 대하여 규칙을 지도하는 의의를 가진다.

9. “반광소재” 영업비밀 분쟁건

허비시반광소재유한회사와 Junchao SONG, 허비뤄이밍터과학기술유한회사, Jianfa LI 영업비밀 침해 분쟁건(하남성 고급인민법원(2016) 예민종347호 민사판결서)

[사건요약] Junchao SONG는 2006년 부터 허비시반광소재유한회사(아래 반광소재회사라 함)에서 업무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일부 성(省)에서의 판매 및 고객개척을 담당하였다. 반광소재회사와 Junchao SONG는 잇따라 2부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비밀유지조항과 동종업체 취업금지 조항을 약속하였다. 반광소재회사는 자신의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제도를 제정하였고 고객 및 잠재고객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Junchao SONG 및 기타 업무원에게 비밀유지 비용을 지불하였다. 허비시뤄이신상업무역회사(아래 뤄이신회사라 함, 즉 허비뤄이밍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전신)는 2011년 6월 22일에 성립되였고 영업범위는 강재, 건재, 철물 전기교통 기자재, 코팅 플레이트, 반광 가드레일이다. 뤄이신회사 영업기간 내에 Junchao SONG는 쑹쌍 명의로 뤄이신회사의 공상등기수속 관련 업무에 참여하였다. 뤄이신회사의 교호계정을 보면 2011년 8월 1일 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뤄이신회사와 반광소재회사의 여러 건의 거래는 중복되였고 Junchao SONG는 개인명의로 뤄이신회사 계정으로부터 여러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다. 반광소재회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Junchao SONG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Junchao SONG, 뤄이신회사는 반광소재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동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2심법원은 반광소재회사가 제공한 거래기록 및 고객와의 어음

거래 중의 “품종”, ”규격”, “수량”은 고객의 차별적 요구를 설명할 수 있으며, “거래일자”는 고객의 주문규칙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고객이 가격에 대한 부담능력과 거래성사 최저가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비고”는 고객의 특수정보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반광소재회사 경영정보의 기밀부분으로 된다. 상기 경영정보와 관련된 고객은 이미 반광소재자료와 안정적인 공급경로를 형성하였고 양호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생산경영에서 실용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광소재회사에게 경제적 이익과 경쟁우세를 가져올 수 있다. 반광소재회사는 상기 경영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밀유지제도를 제정하였으며 고객 및 잠재고객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Junchao SONG 및 기타 업무원에게 비밀유지 비용을 지불한 것은 반광소재회사가 상기 경영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반광소재회사가 제작한 고객리스트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Junchao SONG는 반광소재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가지며 그 중 업무에서 접촉하게 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된다. 회사의 관련 관리 규정과 고객리스트의 비공개성 및 상업적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으로 반광소재회사의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고 뤄이신회사와 빈번히 왕래한 것은 공개, 사용, 타인이 반광소재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반광소재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뤄이신회사는 Junchao SONG가 장악한 반광소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획득 및 사용하였다. Junchao SONG, 뤄이신회사는 반광소재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동권리침해에 해당한다. 뤄이신회사가 이미 뤄이밍터회사로 변경되였기 때문에 권리침해 책임은 뤄이밍터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형적 의의] 본 건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전형적 사례이다. 영업비밀안건은 증거가 복잡하고 은폐하여 통상 심사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특히, 직원의 이직 등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문제는 줄곧 사

법실천의 난점이였다. 본 건의 판결은 영업비밀안건에서의 “대중들이 모르는”, “비밀유지 조치”, “상업적 가치” 및 배상책임의 확정 등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안건 경위에 따라 세부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하여 유사 사례의 심사에 대하여 비교적 큰 규칙지도의 의의를 가진다. 이외에 본 건은 직원이 이직한 후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신의성실의 가치관을 창도하였다.

11. “이차왕(易查网)” 저작권 침해죄 사례

북경이차무한정보기술유한회사, Dong YU 저작권 침해죄 사례(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2015) 포형(지) 초자 제12호 형사판결서)

[사건요약] 피고회사 북경이차무한정보기술유한회사(아래 이차회사라 함)는 “이차왕”의 경영자이다. 해당 회사의 법정대표인 및 기술담당자 Dong YU은 터치스크린 버전의 소설제품 개발방안을 제출하여 이차왕은 WEB 소설 홈페이지를 WAP 홈페이지로 트랜스 코딩하여 모바일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안기구는 이차회사의 서버 하드 디스크를 압류하였고 감정원은 이를 이용하여 랜 환경하에서의 “이차왕”을 구축하여 소설을 검색,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정원은 하드 디스크에서 다운로드한 798개의 소설과 쉔팅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이름의 소설에 대하여 대조한 결과, 같은 바이트가 총 바이트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설은 588개이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차왕”의 개발구상은 검색 및 트랜스 코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용자가 검색 및 열람을 클릭하였을 경우, 출처 홈페이지에 대하여 트랜

스 코딩 후 임시로 하드 디스크에 복제하여 캐시를 형성한 후 사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열람페이지를 나가면 해당 캐시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하지만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이차왕”가 소위의 “임시복제”한 내용을 “트랜스 코딩”을 클릭한 사용자에게 전송한 후 즉시 상응한 내용을 서버 하드 디스크에서 자동 삭제되지 않았으며 “복제”한 소설내용은 기타 사용자들이 계속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상기 행위는 트랜스 코딩 기술에 있어서의 필요과정을 분명히 초과하였다. 이로써 “이차왕”은 직접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안건 관련 문자작품을 제공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차회사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이차왕”을 통하여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문자작품 500여개를 전파하였고 안건 경위가 엄중하며 이미 저작권 침해죄를 위반하였다. Dong YU은 이차회사의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진으로써 저작권 침해죄의 형사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건에서 이차회사와 Dong YU은 자수하고 배상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양해를 획득하는 등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경위가 있으며 법원은 본 건의 범죄 경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에 따라 회사에 벌금을 처하였고 Dong YU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처하였다. 판결을 선고한 후 이차회사와 Dong YU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형적 의의] 트랜스 코딩 기술은 모바일 열람의 보급에 따라 생성한 기술이며 본 건은 모바일 열람 사이트가 트랜스 코딩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위반한 사례이다. 판결은 “트랜스 코딩” 기술의 실시특점과 필요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석하였으며 정보네트워크전파 행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트랜드 코딩”행위의 죄와 비죄사이의 경계선을 규명하였다. 본 건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배경하에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가 기술중립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술사실과 결합하여 관련 기술이 법률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타인의 합법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규명하여

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술을 방패로 삼고 권리침해 경위가 엄중하며 지식재산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 본 건의 판결결과는 인민법원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발생하는 신형법죄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법지혜와 사법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타격하는 강도와 결심을 보여주었다.